

# 원주혁신도시 복합2블록 유승한내들 더스카이 입주자모집공고



※ 2021.10.29.부터 KB모바일인증서를 추가로 도입하여 청약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 콜센터는 청약 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1.10.**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원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 (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제3호)	10년간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10.)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인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원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다자녀	노부모부양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필요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 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10.)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 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홀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10.)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j.hndapt.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점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점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하고 추후 등기 시 소인처리)
-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명서'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전매 포함) 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계약자에게 발생합니다. 「인지세법」 제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과세문서)이며, 세액은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입니다. 이에 본 아파트 계약체결(전매 포함)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질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에 의거 인지세 가산세는 납부기한 이후 3개월 이내 무(과소)납부 세액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무(과소)납부 세액의 200%, 6개월 초과 무(과소)납부 세액의 300%입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 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점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 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정	11월 21일(월)	11월 22일(화)	11월 23일(수)	11월 30일(수)	12월 03일(토) ~ 12월 09일(금)	12월 13일(화) ~ 12월 16일(금)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사 견본주택 방문 (10:00~16: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 앱</li> <li>당사 견본주택</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 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 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 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 견본주택(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481)</li> <l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할 예정입니다.</li> </ul>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6: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청약 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 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원주시 주택과 - 3073호(2022.11.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833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5~39층 3개동 총 386세대 중 일반공급 337세대 [특별공급 49세대(다자녀가구 38세대, 노부모부양 1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sup>2</sup>,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2022000804	01	095.7334	95	095.7334	27.2380	122.9714	64.6709	187.6423	42.2432	71	7	2	9	62	2
		02	115.6720A	115A	115.6720	32.9109	148.5829	78.1400	226.7229	51.0412	210	21	6	27	183	6
		03	115.6304B	115B	115.6304	32.8991	148.5295	78.1119	226.6414	51.0229	105	10	3	13	92	3
합 계											386	38	11	49	337	11

※ 주거공용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m<sup>2</sup>, 원)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 세대수	층 구분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계약 시	중도금(60%)						잔금(30%)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2023.05.16	2023.09.16	2024.01.16	2024.05.16	2024.10.16	2025.04.16	
095.7334	95	71	2층	1	92,460,000	310,970,000	403,430,000	40,343,000	40,343,000	40,343,000	40,343,000	40,343,000	40,343,000	40,343,000	121,029,000
			3~4층	4	92,460,000	324,610,000	417,070,000	41,707,000	41,707,000	41,707,000	41,707,000	41,707,000	41,707,000	41,707,000	125,121,000
			5~9층	10	92,460,000	337,040,000	429,500,000	42,950,000	42,950,000	42,950,000	42,950,000	42,950,000	42,950,000	42,950,000	128,850,000
			10~19층	20	92,460,000	347,600,000	440,060,000	44,006,000	44,006,000	44,006,000	44,006,000	44,006,000	44,006,000	44,006,000	132,018,000
			20층이상	36	92,460,000	355,080,000	447,540,000	44,754,000	44,754,000	44,754,000	44,754,000	44,754,000	44,754,000	44,754,000	134,262,000
115.6720A	115A	210	2층	4	111,720,000	377,190,000	488,910,000	48,891,000	48,891,000	48,891,000	48,891,000	48,891,000	48,891,000	48,891,000	146,673,000
			3~4층	12	111,720,000	393,690,000	505,410,000	50,541,000	50,541,000	50,541,000	50,541,000	50,541,000	50,541,000	50,541,000	151,623,000
			5~9층	30	111,720,000	408,760,000	520,480,000	52,048,000	52,048,000	52,048,000	52,048,000	52,048,000	52,048,000	52,048,000	156,144,000
			10~19층	60	111,720,000	421,520,000	533,240,000	53,324,000	53,324,000	53,324,000	53,324,000	53,324,000	53,324,000	53,324,000	159,972,000
			20층이상	104	111,720,000	430,650,000	542,370,000	54,237,000	54,237,000	54,237,000	54,237,000	54,237,000	54,237,000	54,237,000	162,711,000
115.6304B	115B	105	2층	2	111,680,000	375,540,000	487,220,000	48,722,000	48,722,000	48,722,000	48,722,000	48,722,000	48,722,000	48,722,000	146,166,000
			3~4층	6	111,680,000	392,040,000	503,720,000	50,372,000	50,372,000	50,372,000	50,372,000	50,372,000	50,372,000	50,372,000	151,116,000
			5~9층	15	111,680,000	407,110,000	518,790,000	51,879,000	51,879,000	51,879,000	51,879,000	51,879,000	51,879,000	51,879,000	155,637,000
			10~19층	30	111,680,000	419,760,000	531,440,000	53,144,000	53,144,000	53,144,000	53,144,000	53,144,000	53,144,000	53,144,000	159,432,000
			20층이상	52	111,680,000	428,890,000	540,570,000	54,057,000	54,057,000	54,057,000	54,057,000	54,057,000	54,057,000	54,057,000	162,171,000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sup>2</sup>)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sup>2</sup>) × 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 ÷ 3.3058)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전용면적기준)	095.7334	115.6720A	115.6304B
약식표기	95	115A	115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나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만 표기하였으나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등 주거공용면적과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가면적은 사업주체가 부담토록하고, 감소될 경우 그 잔액은 입주자에게 반환합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또한 지적법상 허용오차 범위에서의 면적증감으로 공유대지지분의 면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도 면적증감이 없는 것으로 보아

- 이에 대한 금액을 청구하지 아니함을 수인하여야 합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기타 추가선택품목 등) 비용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 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본 아파트의 분양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 강화,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 가산)
-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선납 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3%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일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의 지반(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약 식 표 기	95	115A	115B	합 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7	21	10	3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6	3	11
합 계	9	27	13	4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	-----

구 분	내 용																
<b>1회 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b>무주택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b>1인만 신청가능</b>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b>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b>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li> </ul> </li> <li>-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b>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b>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b>청약자격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li>- <b>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 일에 납부한 월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b></p> <table border="1" data-bbox="280 1077 2128 1252"> <thead> <tr> <th data-bbox="280 1077 750 1125">구 분</th> <th data-bbox="750 1077 1220 1125">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data-bbox="1220 1077 1691 1125">그 밖의 광역시</th> <th data-bbox="1691 1077 2128 1125">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80 1125 750 1173">전용면적 102㎡ 이하</td> <td data-bbox="750 1125 1220 1173">600만원</td> <td data-bbox="1220 1125 1691 1173">400만원</td> <td data-bbox="1691 1125 2128 1173">300만원</td> </tr> <tr> <td data-bbox="280 1173 750 1220">전용면적 135㎡ 이하</td> <td data-bbox="750 1173 1220 1220">1,000만원</td> <td data-bbox="1220 1173 1691 1220">700만원</td> <td data-bbox="1691 1173 2128 1220">400만원</td> </tr> <tr> <td data-bbox="280 1220 750 1252">모든 면적</td> <td data-bbox="750 1220 1220 1252">1,500만원</td> <td data-bbox="1220 1220 1691 1252">1,000만원</td> <td data-bbox="1691 1220 2128 1252">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10.)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li> <li>•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li> </ul>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강원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1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10.)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원주시) 거주자가 우선함.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li> <li>■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li> </ul>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총점	84	-	-	-	-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	------	------	----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같은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ul>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li> <li>② ①번에서 입주자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같은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li> <li>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4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④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함.</li> </ol> </li> <li>•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공급일정은 별도 통보)</li> <li>• 예비입주자 선정(순번 포함)은 당첨자 발표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추첨에 불참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기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처리 사항을 준용합니다.</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전검수(서류접수) 기간에 사업체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하여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등을 전산 검색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의 적격 여부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자발표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 내역은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예비입주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과열지구 내 청약 시 1순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ul>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청약신청 유의사항

구 분	선정 방법
신청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10.)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인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li>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이 가능함.</li> </ul>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li> <li>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li> <li>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li> <li>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li> <li>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낮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li> <li>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li> <li>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li> <li>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li> <li>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li> </ol> </li> </ul>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 주택형 (전용85㎡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li> </ul>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2)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b>100%를 추첨제로</b> 공급</li> </ul> </li> <li>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 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추첨으로 선정</li> </ul> </li> <li>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전검수(서류접수) 기간에 사업체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li> <li>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합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 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ul>

## 4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 ■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b>2022.11.21.(월)</b> •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 당사 견본주택 : 10:00~16: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당사 견본주택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481)
일반공급	1순위	<b>2022.11.22.(화) 09:00~17:30</b>		
	2순위	<b>2022.11.23.(수) 09:00~17:30</b>		

- ※ 스마트폰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 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 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6: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5:3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 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 시]** 스마트폰 앱(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청약 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홈페이지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 방식</th> <th style="text-align: center;">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b>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b>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b>자필 서명한 위임장</b>(‘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b>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b>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b>자필 서명한 위임장</b>(‘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10.)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5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및 자격확인 (서류확인)	계약체결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22.11.30.(수)</li> <li>확인방법</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22.12.03.(토) ~ 2022.12.09.(금) 7일간 (10:00~16:00)</li> <li>장소 : 당사 건본주택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48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22.12.13.(화) ~ 2022.12.16.(금) 4일간 (10:00~16:00)</li> <li>장소 : 당사 건본주택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481)</li> </ul>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22.11.30.(수)</li> <li>확인방법</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22.12.03.(토) ~ 2022.12.09.(금) 7일간 (10:00~16:00)</li> <li>장소 : 당사 건본주택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48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22.12.13.(화) ~ 2022.12.16.(금) 4일간 (10:00~16:00)</li> <li>장소 : 당사 건본주택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481)</li> </ul>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 (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wj.hndapt.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쏠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11.30.(수) ~ 2022.12.09.(금)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li> <li>- 스마트폰 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li> <li>※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gt;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gt;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li> </ul>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11.30(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 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6**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서류 제출 기간 및 장소

구 분	내 용
제출기간	2022.12.03.(토) ~ 2022.12.09.(금), 10:00~16:00
제출장소	당사 건본주택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481)

- ※ 계약체결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울 경우 건본주택으로 통지 바랍니다.
- ※ 서류제출 기간 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10.)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특별공급(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 신청서, 특별공급 협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약서	-	당사 견본주택 비치 (인터넷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인터넷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10.)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10.)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아래 참고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당사 견본주택 비치 (인터넷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일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당사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노부모부양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직계존속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 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 존·비속이 있는 경우 피부양인 전원 제출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li> <li>•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li> <li>•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li> <li>※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li> </ul>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권 불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li> </ul>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및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li> </ul>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포함 하여"상세"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li> </ul>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10.)까지 지정하여 발급]</li> </ul>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발급용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li> <li>※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li> </ul>
	○		위임장	당첨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 존·비속 포함)</li> <li>•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li> </ul>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 신고서 등</li> <li>•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ul>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li> </ul>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1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건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소형·저가 주택을 소명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당사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10.)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아래 참고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및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포함 하여"상세"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10.)까지 지정하여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 본인발급용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		위임장	당첨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인정하는 서류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10.)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건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바랍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b></li> <li>■ <b>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b></li> <li>■ <b>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li> <li>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li> <li>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li> <li>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li> <li>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li> </ol> </li> <li>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li> </ol> </li> <li>■ <b>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li> <li>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li> <li>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li> <li>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li> </ol> </li> <li>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li> <li>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li> <li>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li> </ul> </li> <li>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li> <li>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li> <li>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li> <li>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li> </ol> </li> </ul>
---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 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건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 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①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7 계약일정**

■ 계약일정 및 장소

구 분	내 용
계약기간	2022.12.13(화) ~ 2022.12.16(금), 10:00~16:00
계약장소	당사 건본주택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481)
비고	지정된 계좌 입금 후 입금증, 계약금 무통장 입금 내역서 지참

-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 임의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내 용
금융기관명	SH수협은행
계좌번호	1010-2264-0317
예금주	(주)유승종합건설
비고	입금 시 보내는분(입금자명)란에 동·호수,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 일에 SH수협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본인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는 아파트 계약용으로 계약자 본인 발급용에 한함.
대리인 계약 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계약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		위임장	본인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1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인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야 합니다. (현장수납 불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지정계약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동산거래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사업시행인가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외국인인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 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 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서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계약자별로 대출한도가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사업주체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대출 이자 및 보증수수료는 후불제로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전일까지 대납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계약자가 납부 하여야하며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대출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정산해야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기간 내 미정산시 본 계약서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 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입주예정일 : 2025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된 입주예정일을 고려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 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을”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정한 기한 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제21조제3항27호에 따라 도장 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 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어린이집,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맘스카페,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지상1층주차장·지하1층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7M, 지하2층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3M로 계획

**8**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m<sup>2</sup>, 원, VAT포함)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금액	대금납부 일정	
		계약금 10% (계약 시)	잔금 90% (입주지정일)
95	4,100,000	410,000	3,690,000
115A	4,490,000	449,000	4,041,000
115B	4,680,000	468,000	4,212,000

2)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공급금액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확장 시 총 공사금액으로 추후 사업 진행 일정에 따라 계약금, 잔금 순으로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천정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 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 및 확장 시 제공품목 등의 구성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결해야 합니다.
- 비 확장 세대는 각 발코니별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수전이 설치된 곳에는 바닥 배수구가 설치됨)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 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허용오차 내)
- 발코니 비확장 시 각종 선택형(유상, 무상)이 불가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부위 외부장은 발코니 이중창으로 시공되며, 미확장부위는 외부창이 설치 되지 않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플러스옵션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적용 타입	설치 대수	설치위치	설치모델명		공급금액	공급금액 납부일정		제조사
				실내기	실외기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일반형	95	2대	거실+침실1	R-W0721C2SP(거실) R-W0321C2SP(침실1)	RPUQ0403S2R	4,050,000	405,000	3,645,000	LG
		4대	거실+침실1,2,3	R-W0721C2SP(거실) R-W0321C2SP(침실1)/R-W0201C2S(침실2,3)	RPUQ0504S2R	7,100,000	710,000	6,390,000	
	115A,B	2대	거실+침실1	R-W0721C2SP(거실) R-W0321C2SP(침실1)	RPUQ0403S2R	4,050,000	405,000	3,645,000	
		5대	거실+침실1,2,3,4	R-W0721C2SP(거실) R-W0321C2SP(침실1)/R-W0201C2S(침실2,3,4)	RPUQ0504S2R	8,000,000	800,000	7,200,000	
고급형 (공기청정형)	95	2대	거실+침실1	R-W0721C2SP(거실) R-W0321C2SP(침실1)	RPUQ0403S2R	4,650,000	465,000	4,185,000	LG
		4대	거실+침실1,2,3	R-W0721C2SP(거실) R-W0321C2SP(침실1)/R-W0201C2S(침실2,3)	RPUQ0504S2R	8,300,000	830,000	7,470,000	
	115A,B	2대	거실+침실1	R-W0721C2SP(거실) R-W0321C2SP(침실1)	RPUQ0403S2R	4,650,000	465,000	4,185,000	
		5대	거실+침실1,2,3,4	R-W0721C2SP(거실) R-W0321C2SP(침실1)/R-W0201C2S(침실2,3,4)	RPUQ0504S2R	9,500,000	950,000	8,550,000	

- ※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될 경우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냉매 매립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는 미설치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확장시에만 옵션선택이 가능하며,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 ※ 가변형 벽체 옵션 선택시 실이 통합되더라도 에어컨 설치 수량은 조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가전

(단위 : 원, VAT포함)

선택품목		적용 타입	모델명	공급금액	공급금액 납부일정		제조사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현관	공기청정시스템 (에어샤워 / 에어브러쉬)		전타입	AS-150/DSC-300	690,000	69,000	621,000	그렉스	
주방	식기세척기		전타입	DWA90R5B	1,270,000	127,000	1,143,000	SK	
				DUBJ2GA	1,440,000	144,000	1,296,000	LG	
	오븐	스팀오븐 IOT스팀오븐		전타입	EONB401SA	550,000	55,000	495,000	SK
					EONB440SA	800,000	80,000	720,000	SK
	쿡탑	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전타입	ERA-BT030	800,000	80,000	720,000	SK
		인덕션2구+가스1구			GRA-BI322H	800,000	80,000	720,000	SK
		보더리스 인덕션			IHRBQ40E	1,730,000	173,000	1,557,000	SK
	음식물처리기		전타입	에코업(DCS 1902)	1,100,000	110,000	990,000	제이엔에이지 코퍼레이션	
	냉장고(LG) 오브제 4도어		95	M622GPB352	3,260,000	326,000	2,934,000	LG	
	김치냉장고(LG) 오브제 3도어			Z331GBB151	2,050,000	205,000	1,845,000	LG	
	냉장고(LG) 오브제 4도어		115A,B	M622SGS352	3,260,000	326,000	2,934,000	LG	
김치냉장고(LG) 오브제 3도어		Z331SGS151		2,050,000	205,000	1,845,000	LG		
다용도실	의류관리기(5별용)		전타입	S5ROC/S5GFO	1,870,000	187,000	1,683,000	LG	
발코니1	전동빨래건조대		전타입	ED-700	180,000	18,000	162,000	키움라인	

- 식기세척기 미선택시 하부장이 설치되며, 판매가 산정시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것임
- 오븐 선택시 기본제공되는 전기오븐은 시공되지 않으며, 판매가 산정시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것임.
- 인덕션+하이브리드 선택시 기본제공되는 가스쿡탑은 시공되지 않으며, 판매가 산정시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것임.
- 오브제냉장고 미 선택시 냉장고장이 설치되며, 판매가 산정시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것임.
- 오브제김치냉장고 미 선택시 키큰장이 설치되며, 판매가 산정시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것임.
- 가전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다.

2) 가구

(단위 : 원, VAT포함)



선택품목		적용 타입	공급금액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현관	신발장 고급형	95	2,090,000	209,000	1,881,000	
		115A	2,640,000	264,000	2,376,000	
		115B	1,350,000	135,000	1,215,000	
	중문	95,115A	1,500,000	150,000	1,350,000	3연동도어
		115B	1,500,000	150,000	1,350,000	스윙도어
	현관팬트리 고급형	115B	2,880,000	288,000	2,592,000	
거실	아트월1(앞면)	전타입	1,600,000	160,000	1,440,000	
	아트월2(후면)	전타입	1,600,000	160,000	1,440,000	
	FIX판넬	전타입	360,000	36,000	324,000	
욕실	고급형	95	1,850,000	185,000	1,665,000	
		115A	2,500,000	250,000	2,250,000	
		115B	1,310,000	131,000	1,179,000	
	비데	전타입	320,000	32,000	288,000	
주방	주방 상·하부장 고급형+ 후드 고급형 *주1)	95	3,180,000	318,000	2,862,000	
		115A,B	3,440,000	344,000	3,096,000	
	주방 상판+벽체+ 사각싱크볼+수전고급형	95	4,320,000	432,000	3,888,000	
		115A,B	4,210,000	421,000	3,789,000	
	아일랜드 식탁	95	2,080,000	208,000	1,872,000	하이라이트2구 + 팝업무선충전 포함
		115A,B	2,030,000	203,000	1,827,000	
	빌트인 냉장고장 (LG오브제 전용) *주2)	95	830,000	83,000	747,000	
		115A,B	1,850,000	185,000	1,665,000	
	주방팬트리 고급형	95	2,490,000	249,000	2,241,000	
		115A	4,210,000	421,000	3,789,000	
115B		4,030,000	403,000	3,627,000		
침실1	침실1 수납강화형	95	3,840,000	384,000	3,456,000	
침실2	불박이장1	95	1,330,000	133,000	1,197,000	
침실3	불박이장2	95	1,330,000	133,000	1,197,000	
침실3	불박이장1	115A,B	1,330,000	133,000	1,197,000	
침실4	불박이장2	115A,B	1,330,000	133,000	1,197,000	
침실2,3	일체형 불박이장	95	2,310,000	231,000	2,079,000	가변형벽체 미 선택시 선택 가능
침실3,4	일체형 불박이장	115A,B	2,520,000	252,000	2,268,000	
다용도실	의류관리기 수납장(LG오브제 전용)+ 벽판넬 다용도걸이	전타입	1,340,000	134,000	1,206,000	
드레스룸	드레스룸 고급형	95	4,210,000	421,000	3,789,000	
		115A,B	4,790,000	479,000	4,311,000	

※ \*주1) 주방 상·하부장 고급형+후드 고급형 및 \*주2) 빌트인 냉장고장(LG오브제 전용) 옵션 선택 시 가구 마감재는 S-TEXTURE로 마감(유리상부장 제외)되며, 미 선택 시 PET 로 마감됩니다. \*주1) 또는 \*주2) 중 1개의 옵션만 선택한 경우 마감재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발코니확장비, 플러스옵션) 납부계좌

구 분	내 용
금융기관명	SH수협은행
계좌번호	1010-2264-0279
예금주	(주)유승종합건설
비고	입금 시 비교란(입금자명)에 동·호수, 성명 필히 기재

■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기타 추가선택옵션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동법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타 추가선택옵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신규, 해지)변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등급 또는 등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타입별 유상옵션 및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 1) 공통사항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입니다.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 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공급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2)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구분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문	목재 문, 플라스틱 문(문짝, 문틀, 상부 덧판, 문선), 창호철물 일체(도어록, 도어레버 등), 디지털도어록	각실 PL창호, 세대현관 방화문 및 도어록, 실외기실 강재도어, 실외기 루버
바닥	강마루, 타일,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현관디딤판, 발코니 바닥타일(시멘트몰탈 포함), 재료분리대	바닥 난방,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초배지 포함), 벽체 마감(타일), 발코니 수전, 신발장, 드레스룸 도어	석고보드마감, 단열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발코니 벽 도장, GAS배관
천장	천장지(초배지 포함), 등 박스(우물천장 포함), 반자동림(몰딩 포함)	천장틀 위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천장 도장, 소방시설, 전열교환 환기시스템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비데 등), 수전류(절수페달 포함), 액세서리, 천장재(천장틀 포함), 재료분리대, 젠다이, 샤워부스, 욕실장, 욕실헨, 욕실바닥 및 벽타일, 배수구 커버	조적, 방수, 미장, 전기, 설비, 배관/배선
주방가구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수전류, 주방가전 일체(가스쿡탑, 음식물탈수기, 렌지후드, 주방액정TV 등)	소방감사 관련 자동차 소화기 및 주방소화기 및 주방 배기 덕트
조명기구	부착형, 노출형 조명등기구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매입등기구

주택형	95	115A	115B
마이너스 옵션금액	37,407,000	44,786,000	44,770,000

## 4)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을 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배선기 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 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추후 별도 안내문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해야 하며,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자는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사, 시공사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 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따라 원인규명 의무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자는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9

## 유의사항

## ■ 일반사항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황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후 주변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각종 기반시설(도로, 학교, 공공시설, 녹지 등) 공사로 인하여 현재와 다를 수 있고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외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정부의 정책 또는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업체 등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지적확정 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함)
- 잔금납부 전 개별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은 불가능하고, 이를 위반 시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완료 시까지 입주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잔금납부 후 개별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발코니확장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체결 시 유의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전·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계약자의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유입되는 초등학생은 단구초등학교로 배정될 예정이며, 중·고등학교는 관내 배치 예정입니다. 단, 학생배치계획은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학생 배치여건 변화(관내 공동주택 개발, 학생 수 변동)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은 강원도 원주 교육지원청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구초등학교는 본 사업부지 경계면으로부터 북서 측 방향 직선거리 약 830m 지점에 위치하며, 왕복 6차선(가감속차선 포함 8차선)포함 횡단보도를 3회 이상 횡단하여야 하므로 계약 체결 전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통학로 등에 대한 여건 미확인으로 추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 관련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인.허가 사항

- 본 아파트는 원주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에 따라 입주민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하여 사업부지 면적 중 380.8㎡(인.허가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감될 수 있음)의 면적만큼 도시계획시설(가감속완화차로 및 회전교차로 등) 설치 완료 후 원주시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오니 계약 체결 전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 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우수의 원활한 배출을 위해 사업지 남서측 완충녹지(반곡동 1834번지) 지하일부(8㎡)에 우수관로가 매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해당 관로에 대한 녹지점용료가 매년(1회) 발생되며, 입주 후 관리비 등으로 부과될 예정이오니,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 하시어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원주시 경관심의 의결에 따라 101동 및 102동 남측부 19번국도(사업부지 인접면)에 방음벽(총 240M, 교량부 L:90M, H:6M, 토공부 L:150, H:10M)이 설치 되었으며, 아파트 준공시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 방음벽 시설물관리 인계, 도로점용료에 대한 관리·의무 승계, 방음벽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료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입주자의 비용으로 관리되오니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방음벽 설치에 따른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 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 공동사항
  - 본 아파트의 입주자는 계약 체결 전 입주자모집공고, 견본주택 등을 확인 후 계약체결 한 것으로 계약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및 실 시공 등 구조/성능/상품개선(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동 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 및 난간, 입면, 경비실, 업무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승강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담장개방화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사생활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에 면한 인접대지 레벨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옹벽 또는 사면의 노출범위 및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및 기계실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 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 등을 위한 시설물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 환풍구 소음이나 바람에 일부세대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상1층주차장-지하1층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7M, 지하2층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3M로 계획되오니 사전에 인지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에서 지상주차장 옥상 및 업무시설 옥상이 보일 수 있으며, 옥상조경 및 옥상배수, 설비 등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세대 내 프라이버시, 조망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및 102동 남측부 사업부지 경계면으로부터 20m 이격된 거리에 19번국도(고가도로) 차량통행에 등에 따른 소음, 매연,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 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의 비용으로 관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인 이사 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일부 동은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사다리차 이용 시 거실 투시형 난간 높이로 인하여 적정크기 이상의 냉장고, 가구 등은 운반이 불가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공개공지는 단지 코너 부위 4개소에 위치하여 단지 내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2) 단지 여건, 배치 및 조경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 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근린생활시설(실외기 등), 관리 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 시설물 및 포장, 식재 등은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 여건에 따라 수량, 규격, 종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선, 기능, 디자인 개선 등을 위하여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색채,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는 층에 따라 인접한 동에 의해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인접한 세대에 의해 사생활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동 저층부는 석재 및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동 저층부는 외벽은 석재 마감 되며 필로티 내부벽체는 뽕칠 마감 됩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 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현관과 인접한 계단실 또는 승강기 홀 채광창의 위치는 동 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보행자 통로, 주민공동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모형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은 실제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3동 주변 및 필로티 등 단지 내의 급·배기 D/A(설비환기구)가 설치되며 일부 저층세대에는 미관저해,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옥탑에는 소방용 고가수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및 업무시설용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인입 Pad S/W Box가 D/A(설비환기구)측면 또는 공개공지(조경부분)에 한전과 협의 후 설치되므로 위치에 따라 미관저해 및 보행로를 일부 점용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자전거보관소, D/A(설비환기구)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해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층 필로티 및 외부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 분리수거장등(101동 동측, 102동 서측, 103동 동측)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용 에어컨 실외기 및 환기시스템 등으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미관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각동 옥상에는 인명 등을 구조 할 수 있는 구조 공간 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3) 단위세대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 (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 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 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 등을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장 및 거울설치 부위 등의 비 노출면(바닥, 벽, 천장)은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방 상부에는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 설치된 콘센트는 이설할 수 없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등)의 도장 제품은 설치 후 시간 경과 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류 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 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거실 및 침실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입니다.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없으며,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절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행정관청에 신고 및 관리주체에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 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발코니 벽체 및 천장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일부 벽체 및 천장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 난간(투시형, 콘크리트난간)의 높이와 샷시 설치 높이는 실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 시 마감재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확장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 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저해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의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있는 배관의 경우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는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제조업체,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기계 환기장비 및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 수전(세탁기, 청소용 등)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전기분전함 및 통신 단자함 설치 위치는 관련 심사에 따라 은폐된 장소(팬트리 내부, 발코니2 내부 등)를 제외한 침실 벽체에 설치 예정으로 인허가 및 본 공사 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급수, 급탕분배기, 에어컨 냉매 박스 등은 사업계획승인 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다용도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등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 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해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세대별 골조 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는 개별난방에 의한 기계설비시설물로 계획됩니다.
- 실외기실 그림의 재질, 색상, 모양, 크기 및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의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선택으로 인한 평면(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기 매입 설치된 콘센트는 이설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 사용, 장시간의 음식물 조리 및 실내빨래 건조대 사용 등의 상황에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부 세대 비 확장 시 하부 세대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거실 우물천장 깊이, 폭, 커튼박스 깊이, 등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물천장에 단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비 확장형 선택 시 인접세대에 발코니확장 세대가 있을 경우 상호간의 안전한 차음성능 확보를 위해 콘크리트 벽으로 구획이 되며 법적 단열성능을 만족하기 위하여 당해세대 발코니에 단열과 조적 벽이 시공되어 불가피하게 발코니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비 확장형 선택 시 가구배치 및 마감이 확장세대와 상이하므로 계약체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 확장형 선택 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 및 일부 옵션품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과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 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무선AP는 거실 1개소에만 설치되며 세대 구조 및 거리에 따라 무선 성능 저하 및 무선 접속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동체감지기 설치는 101동 3층,4층, 102동 및 103동 2층,3층, 각 동 최상층에 설치되며, 설치 개소,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 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 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됩니다.
- 대피 공간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피난구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되는 물건 등을 적재할 수 없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비상시의 피난시설로서 화재 등 비상시에만 개방하며, 개방에 따른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리는 입주자의 책임임을 인지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위치는 타입 별, 층별로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공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분양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대피공간의 바닥과 단 차이를 두어 시공되며, 물청소 등을 할 경우 아래층에 누수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24)을 준수합니다.
- 본 아파트 주거(단위세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별표5) 지역별 시도분류에 따른 중부1지역으로 설계 반영되었습니다.
- 「실내 공기질 관리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개시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욕실 내부와 외부 바닥 레벨은 물 빠짐 유도(구배)를 위해 -10mm 내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업무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

- 본 아파트의 업무시설 및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등)은 “하나의 단지로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외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작은 도서관은 102동 1층, 어린이집 및 경로당은 103동 1층에 위치합니다.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은 동선, 성능개선, 디자인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업무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용 에어컨 실외기 및 환기시스템 등으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미관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옥탑에는 환기 및 실외기 등을 위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진동, 소음, 냄새,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5) 주차시설

- 본 아파트는 주상복합 단지로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이 복합단지로 설계되어 있으며,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진출입구 및 지하주차장(지상 1층, 지하 1층 및 지하 2층)이 공동주택과 별도로 구획 설계되어 있으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업무시설 주차장 진출입구는 원주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며, 계약 체결 후 교차로, 신호등 등의 설치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 진출입구는 단지 동측 아파트 차량출입구에서 진입 가능하며, 설치되는 주차 차단기는 차량통행 및 단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진출입구는 단지 동측 업무시설 차량출입구에서 진입 가능하고, 진출입 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차량의 교통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되는 주차 차단기는 차량통행 및 단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캐노피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은 사업계획승인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고,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 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주차구역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7개소(총 16대)로 지상 1층 1개소(2대), 지하 1층 3개소(7대), 지하 2층 3개소(7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용량, 사용비용, 운영방안 등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협의 운영하여야 합니다.
- 업무시설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2개소(총 4대)로 지하 1층 1개소(2대), 지하 2층 1개소(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용량, 사용비용, 운영방안 등은 입주 후 별도 업무시설 입주자들이 협의 운영하여야 합니다.

#### ■ 기본주택 및 홍보물 관련

- 기본주택에는 95, 115A 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기본주택에 설치된 디퓨저는 기본주택용 환기시설로 본 공사 시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등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설계 시 동선의 개선 및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주택 내에는 분양가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기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됩니다.
- 기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기본주택에 설치된 분전반·통신 단자함,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선홍통, 냉매박스, 실외기 배관,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악세사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발코니 미 확장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기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는 기본주택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마감자재는 시공시기,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출시에 따라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대체 시공 될 수 있으며 디자인 등록에 따라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기본주택 및 모형, 홈페이지상의 마감재리스트,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도면을 우선으로 함)
- 현관디딤판, 화장대 등에 사용되는 엔지니어드스톤은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무늬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고, 본 공사 시 기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석재의 결은 다를 수 있으며,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인터넷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기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도서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계획변경 또는 설계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기본주택, 분양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건축물,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체·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기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기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축벽디자인, 외벽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포장, 단지 내 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 공간 등의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같은 타입일 경우라도 동·호수에 따라 기본주택에 설치된 평면과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 기타

####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고효율기자재	적용	전동기 / 급수펌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거실 / 침실 / 주방 : 대기전력차단 콘센트를 각 1개소에 설치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공용화장실 :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 각 실 :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 설비	적용	절수형 설비 설치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기준	적용 여부
신재생 에너지 설비 (제7조 제2항 제9호)	태양광 발전 설비	전체 조명설비 용량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 비율 20% 이상 설치	적용
	단열조치 준수(가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적용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 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적용
	방습층 설치(다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적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적용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적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같은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적용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의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적용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고효율변압기 설치)	적용
전기부문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	적용
	조명설치(다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라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 -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차단콘센트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인증번호
		제 2022-707-004 호
<p>이 건물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인증합니다.</p> <p>※ 이 인증서는 2021년 05월 인증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 이 인증서를 각종 광고 및 건물건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합니다.</p>		
신청인	이름	(주)유승종합건설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51, 유승종합건설 (논현동)
건축물	이름	원주혁신도시 복합 2BL 추상복합 신축공사
	주소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833번지
인증내용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업무시설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숙사 · 도시형생활주택
	초고속정보통신건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등급 <input type="checkbox"/> 1등급 <input type="checkbox"/> 2등급
	홈네트워크건물	<input type="checkbox"/> AAA(홈IoT) <input checked=""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
<p>2022년 06월 17일</p> <p>강릉전파관리소장 </p>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제57조 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구분		금액	구분		금액	구분		금액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23,939,512,861	건축비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26,563,320,000	기계 설비	위생기구공사	501,904,000	
	기간이자	4,152,819,954			용접공사	-		난방설비공사	1,364,488,000	
	필요적 경비	1,774,988,040			조적공사	849,376,000		가스설비공사	237,744,000	
	그밖의 비용	11,884,939,145			미장공사	1,473,200,000		자동제어설비공사	58,928,000	
	계	41,752,260,000			단열공사	673,608,000		특수설비공사	-	
건축비	토목	토공사			1,725,168,000	방수,방습공사		695,960,000	그밖의공 종	공조설비공사
		흙막이공사			-	목공사	3,085,592,000	전기설비공사		4,096,512,000
		비탈면보호공사			-	가구공사	3,437,128,000	정보통신공사		1,967,992,000
		옹벽공사			-	금속공사	1,589,024,000	소방설비공사		4,118,864,000
		석축공사			-	지붕 및 홈통공사	-	승강기공사		1,246,632,000
		우,오수공사			486,664,000	창호공사	3,457,448,000	그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공동구공사			-	유리공사	720,344,000		이윤	5,297,177,016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304,800,000	타일공사	1,245,616,000	계	97,869,000,000	
		도로포장공사			1,220,216,000	돌공사	1,846,072,000	간접비	설계비	1,335,840,000
		교통안전시설물공사			203,200,000	도장공사	496,824,000		감리비	3,012,123,700
		정화조시설공사			-	도배공사	865,632,000		일반분양시설경비	9,000,000,000
		조경공사			1,758,696,000	수장공사	1,662,176,000		분담금 및 부담금	350,000,000
		부대시설공사			2,292,096,000	주방용구공사	668,528,000		보상비	-
		공통가설공사			2,255,520,000	잡공사	6,661,910,984		기타 사업비성 경비	29,397,110,212
가시설물공사	527,304,000	급수설비공사	4,599,432,000	계	43,095,073,912					
지정 및 기초공사	1,317,752,000	급탕설비공사	585,216,000	그밖의 비용	16,430,306,088					
철골공사	-	오배수설비공사	518,160,000	합 계	199,146,640,000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 공시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택지비 가산비	법정 택지이자	4,152,819,954	법정초과 복리시설 건축비		1,107,811,384
			기부채납 도로	451,931,559	인텔리전트 설비 공사비
	초고속통신특등급	1,112,775,240			
	에어컨냉매배관	670,155,930			
	제세공과금	1,323,056,481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2,054,087,381
말뚝박기 공사비	1,509,032,430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519,809,400	

			법령개정에 따른 가산비	전기자동차충전기	194,213,800
	흙막이 및 차수벽공사비	7,820,246,058	사업승인조건 공사비	결로방지공사비	1,792,704,150
	방음시설 설치비	2,557,643,760		건강친화형주택	1,019,340,450
				외관특화공사비	1,146,115,170
				법정초과조경설치비	-
	소 계(택지비 가산항목)	17,814,730,242	분양보증수수료		534,624,655
			소 계(택지비 가산항목)		16,431,172,19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원주혁신도시 복합2블록 유승한내들 더스카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4522022-101-0000200 호	일금일천삼백구십사억이백육십사만팔천원정 (₩139,402,648,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사용검사 또는 당해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증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	사업자등록번호
건축	(주)한국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	1,814,182,700	220-81-11342
전기	(주)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537,941,000	132-81-12608
정보통신	(주)한성테크	145,200,000	107-88-43365
소방	(주)한성테크	514,800,000	107-88-43365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회사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주)유승종합건설	인천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51, 7층	120111-0497778
시공회사	(주)유승종합건설	인천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51, 7층	120111-0497778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wj.hndapt.co.kr/>
- 견본주택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481
- 분양문의 : 1833-8733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